

## 제 1 장 총 칙

### 제1조 (명칭)

본 법인은 사단법인 한국여성디자이너협회 (이하 “본 회”라 한다)라 칭하고, 영문으로는 Korea Woman Designer Association이라 표기하고 약칭으로 KWDA라 한다.

### 제2조 (목적)

본회는 회원 상호간의 네트워크를 강화하고, 역량 있는 신진 여성디자이너 를 발굴, 지원하며 사회적 리더십을 갖춘 한국의 여성디자이너가 디자인을 통하여 국가발전과 인류문화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

### 제3조 (사무소의 소재지)

본회의 주 사무소는 수도권에 두고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국내외의 필요 한 곳에 분사무소 또는 출장소를 둘 수 있다.

### 제4조 (사업)

본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행할 수 있다.

1. 본회 회원의 권익보호와 건전한 발전을 위한 대정부 건의
2. 디자인 산업의 발전을 위한 학술 및 연구 사업
3. 여성디자이너 및 관련종사자를 대상으로 하는 디자인 교육과 리더십 함양을 위한 사업
4. 국내외 디자인 네트워크의 구축 및 확장과 긴밀한 교류를 위한 사업
5. 회원지 및 기타 간행물의 발간 사업
6. 기타 본회의 목적 달성에 적합한 사업